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9가단129538(본소), 2019가단148713(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정원일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42,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869,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03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 및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 주식회사는 E에서 제작한 건축패널과 블록의 국내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경 F과 경기 양평군 G 토지에 E에서 제작된 조립식 주택의 건축자재로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에게 건축자재대금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위 계약금 중 21,000,000원을 E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던 중, 원고와 F은 2018. 4. 23.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2018.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입할 E 제작 건축자재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과 관련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I공사
2. 공사장소 : 경기 G
3. 착공연월일 : E의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도착하고 3일 이내
4. 완공예정연월일 : 착공일로부터 40일(단, 천재지변이나 우수로 인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계약금액 : 12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350만 원(단, 시공 중 설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토목, 정화조, 인입비, 현장대리인 등은 별도임) 순수 건물에 대한 공사비만 계약임
6. 계약금 : 122,500,000원 중 피고가 E에 직불 처리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착공일에 지급한다.
7. 착공계약금 : 30,000,000원 착공일에 지급한다.
8. 기성부분금 : 위 6, 7항 외의 남은 금액 중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필요한 건축자재나 장비대가 있다면 피고가 직불처리하기로 하고 남은 금액은 완공과 동시에 전액 지급한다.
9. 공급자재 : 싱크대, 단열재, 창호, 변기2개, 인건비 등은 견적가에 포함시키고 그 외는 피고가 부담한다(단 하자보수 2년, 창호는 22mm 2중창, 보일러기기는 포함임).
10. 공사대금 지체상금률 : 청구금액은 0.02%(일일 기준)
11. 특약사항
 - 가) 공사의 편의상 수급자는 C로 하고 시공사는 J로 지정한다.
 - 나) E에 직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D 주식회사에서 하고, 시공에 대한 금액은 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다) 착공 전 발생한 문제점으로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라. 피고가 E로부터 수입한 건축자재가 2019. 5. 10.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공사는 E 소속의 엔지니어가 입국한 2018. 6. 5.경 착공되어 2018. 9. 7.경 완공되었다.
 - 마. 원고는 피고가 수입한 건축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2018. 5. 9.경 관세사에게 부가가치세

7,003,280원(관세청은 위 건축자재를 70,032,885원으로 평가하였다)과 통관비용을 합쳐 1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1) 피고는 F를 통하여 E에 건축자재대금 21,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H를 통하여 추가로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여 합계 71,000,000원의 건축자재대금을 E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E로부터 파견된 엔지니어 비용으로 4,000,000원을 E에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5. 8.부터 2018. 8.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3,2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2018. 8. 15. 1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지급날짜	금액(원)	순번	지급날짜	금액(원)
1	2018. 5. 8.	20,000,000	7	2018. 7. 11.	3,000,000
2	2018. 5. 25.	4,000,000	8	2018. 7. 17.	7,000,000
3	2018. 5. 30.	6,000,000	9	2018. 8. 1.	1,600,000
4	2018. 6. 18.	8,000,000	10	2018. 8. 9.	5,000,000
5	2018. 7. 2.	4,900,000	11	2018. 8. 13.	3,400,000
6	2018. 7. 3.	100,000	12	2018. 8. 15.	2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22,500,000원에서 아래의 청구금액 68,096,403원을 추가하고 공제금액 137,726,442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이 52,869,961원(= 122,500,000원 + 68,096,403원 - 137,726,442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869,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항 목	청구금액(원)	공제금액(원)
1	건축자재대금		70,032,885
2	시공부분 부가가치세	5,246,711	
3	기지급 공사대금		61,400,000
4	직접투입비용	32,365,222	
5	추가공사대금	20,978,340	
6	미사용 자재대금	9,506,130	
7	하자보수비용		6,293,557
	합 계	68,096,403	137,726,442

나. 순번 1항 내지 6항에 관한 판단

1) 건축자재대금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122,500,000원에서 E에 직불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E에 건축자재대금 71,000,000원, 엔지니어 비용 4,000,000원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22,500,000원에서 E에 지급한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0,000원(= 122,500,000원 - 75,000,000원)이 된다.

○ 원고는 건축자재대금을 실제 수입가격인 70,032,885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피고가 E에 직불처리한 금액을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엔지니어 비용 4,000,000원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15.경 피고에게 건축비 집행내역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엔지니어 비용 4,000,000원의 공제를 인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에는 E 소속 엔지니어의 파견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공부분 부가가치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7,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지급 공사대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3,2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63,200,0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직접투입비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 표 기재의 각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365,222원¹⁾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내역	청구금액(원)
1	부가가치세, 통관 운송비, 보관, 환적비	13,605,900
2	현장도로복구	2,171,000
3	기초바닥보강 등	5,174,000
4	엔지니어 통역	3,720,000
5	엔지니어 숙식비	1,220,000
6	비계설치	2,720,000
7	건축주 미구입 자재	3,754,322
	합계	32,365,222

나) 판단

① 부가가치세, 통관 운송비, 보관, 환적비

갑 제2,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순수 건물에 대한 공사비만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자재는 피고가 직접 E로부터 수입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H로부터 건축자재 통관을 위해 부가가치세 7,003,280원, 통관 운송비 3,116,020원, 보관 및 환적비 3,486,600원, 추가운송비 2,000,000원이 소요된다는 통지를 받고 통관업무를 대행한 K관세사무소에

15,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부가가치세 7,003,280원을 환급받은 사실(원고는 2018. 6. 25.자 문자메시지로 보낸 중간정산내역에서 부가가치세 7,003,280원의 환급을 인정하고 이를 공제하였다)이 인정되므로, 건축자재의 수입과 통관을 위해 지출된 8,596,720원(= 15,600,000원 - 7,003,280원)은 피고가 부담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²⁾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현장도로복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도로가 좁고 상태가 좋지 않아 건축자재를 운반하면서 도로 파손에 대한 복구비로 2,1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운반 과정에서 발생시킨 도로 파손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③ 기초바닥보강 등

원고는 기초바닥공사가 잘못 시공되어 재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초바닥보강 장비료로 800,000원, 기초콘크리트공사에 1,290,000원, 기초레미콘타설공사에 2,584,000원, 기초가설재에 500,000원 합계 5,174,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기초바닥보강 등 공사를 재시공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초바닥공사를 재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초보강공사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대금이 5,174,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부분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만 다툼 뿐,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

④ 엔지니어 통역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엔지니어와의 통역을 위해 3,7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3,720,000원 상당의 통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엔지니어 숙식비

원고는 엔지니어의 숙식비로 1,2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220,000원 상당의 숙식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비계설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비만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비계 가설재를 설치하였으므로 비계설치대금 2,7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비계 가설재 설치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공자로서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부담할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건축주 미구입 자재

원고는 건축자재를 조립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일부 제공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자재대금 3,754,2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하여야 하는 자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들을 조립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속자재는 시공자인 원고가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가 직접투입비용 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원고가 대납한 통관 운송비, 보관, 환적비 8,596,720원, 기초바닥보강 등 재시공 공사대금 5,174,000원 합계 13,770,720원이 된다.

5) 추가공사대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의 각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978,3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품목	내역	청구금액(원)
1	지붕	샌드위치판넬	4,899,340
2	전기,통신	통신추가계약변경	2,513,000
3	건축설비	자재 전부 변경	2,163,000
4	난방시설	엑셀작업	1,242,000
5	난방시설	방통작업	1,677,000
6	인테리어도배	시공사 일부부담	636,000
7	익스테리어	외장마감 스타코	200,000
8	장비대	추가공사장비료	3,208,000
9	현관	불박이신발장	300,000
10	일반관리비	추가공사	4,140,000
		합계	20,978,340

나) 판단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샌드위치판넬 재료비 2,329,340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추가공사대금은 추가공사 및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329,340원을 넘는 추가공사대금청구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은 2,329,340원을 인정한다(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미사용 자재대금

원고는 E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 중 사용하지 않은 건축자재대금에 상당하는 9,506,130원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는 피고가 E에 직불한 건축자재대금을 122,500,000원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사용하지 않은 건축자재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5,150,060원[= 122,500,000원 +

20,850,060원(= 부가가치세 4,750,000원 + 통관 등 비용 8,596,720원 + 기초바닥보강 등 공사 5,174,000원 + 샌드위치판넬 재료비 2,329,340원) - 138,200,000원(= 건축자재대금 등 7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순번 7항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아래 제3항 기재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6,293,557원으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택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93,557원 상당의 보수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293,55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하자항목	하자보수비(원)
1	현관 입구 부위 재료분리대 미시공	16,478
2	전체 창호의 규격 및 정밀도 불량	1,165,853
3	화장실 양변기 시공불량, 급배수 배관설치 하자	491,540
4	화장실 수전류 설치 및 주변마감 하자	142,871
5	급수 배관 불량으로 누수현상	8,442
6	벽체 마감 몰딩 공사 하자	437,783
7	내부 계단공사의 하자	77,345
8	물받이, 2층 테라스 마감처리 하자 및 2층 바닥 균열	3,567,896
9	지붕에 페인트 얼룩	52,443
10	기초바닥과 벽체의 연결부분 틈 발생으로 인한 하자	208,291
11	지붕 및 벽체의 연결부분 틈 발생 하자	124,615
	합 계	6,293,557

○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날인 2018. 9. 7. 각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는 2021.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6,293,557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주장에는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2021.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준비서면이 2021.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양 채권은 최종적으로 2018. 9. 7. 대등액인 5,150,06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택에 15,027,840원 상당의 보수를 요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15,027,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2018. 6. 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8. 9. 7.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예정기일인 40일을 초과하여 52일간 지체하였다. 또한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간에 대하여도 지체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82일간 지체하였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2,009,000원(= 122,500,000원 × 지체상금률 0.02% × 82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자보수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가) 다툼이 없는 부분

하자보수비용 중 본소 나항 기재 하자로 인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6,293,5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다투는 부분

바닥 마감재시공 하자보수비용 4,973,262원과 싱크대 하자로 인한 교체비용 3,761,016원에 관하여 차례대로 본다.

○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바닥 마감재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4,973,262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4,973,7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자재의 보관은 피고의 책임에 속하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통관을 마친 건축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송한 후 2018. 5. 10.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덮개로 덮어 마무리 작업을 마친 사진과 함께 ‘잘 덮어서 마무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통관 이후 운송과 보관이 모두 원고의 책임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감정인 L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싱크대 교체비용 3,761,016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감정인 L의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감정 당시 하자상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을 제3호증의 2)에만 근거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싱크대의 하자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바닥 마감재시공 하자보수비용 4,973,262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266,819원(= 6,293,557원 + 4,973,262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이를 앞서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5,150,060원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6,116,759원(= 11,266,819원 - 5,150,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채권

가)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40일,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0.02%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8. 6.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8. 9. 7.경 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완공예정일인 2018. 7. 15.을 지나 54일이 지체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일수 1일당 이 사건 공사대금의 0.0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323,000원(= 122,500,000원 × 0.02% × 54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1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체상금의 약정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지체상금의 요건인 공사완공의 지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기초바닥보강 등 재시공과 기상상황, 마감재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다만, 이 사건 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참조).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실시공된 기초바닥보강공사를 재시공하느라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중국 엔지니어의 입국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우기와 겹쳐 다소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지체상금을 위 금액의 70%로 감액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926,100원(= 1,323,000원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042,859원(=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6,116,759원 + 지체상금 926,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옥

1) 원고는 2021. 7. 9.자 준비서면과 2021. 8. 10.자 준비서면에서는 합계액을 32,087,342원으로, 건축주 미구입 자재대금을 3,476,442원으로 정정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추가운송비 2,000,000원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0. 6. 16.자 준비서면과 2021. 1. 14.자 준비서면에서는 추가운송비 2,000,000원을 주장하고 있다.